

#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4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4. 23)  
상정 및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미관과장 황인화)

### □ 제안이유

- 노점을 행정의 제도적 권역으로 흡수하여 양성화 및 합법화 추진을 위한 노점상 허가제 추진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함.(안 제명)
- 나. 제2조의 제목을 변경 함.(안 제2조 제목)
  -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
- 다. 부천시노점허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의2 신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3.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조례개정으로 광고탑, 현수막, 구두수선대 등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지?	○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추경에 예산반영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임
○ 허가제 추진시 기업형 노점상이 들어 올수 없도록 선별해야 되고, 기존 노점상과 신규 노점상의 갈등과 상가 건물앞에 노점상 허가로 인한 또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세부시행 규칙을 정하여 추진해야 될것임.	○ 노점상 허가시에는 소득 기준 등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상가앞의 노점상 허가는 건물주나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임.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점용료는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를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으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노점허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노점상 허가대상자의 자격기준 선정과 설치·영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노점허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시 소속 관련 공무원 5명 이내
3. 법조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9명 이내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점상업 무담당과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안전심의 또는 그 밖의 정책건의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86호
의결 년월일	2010. 4. 26 (제160회)

제출년월일 : 2010. 4. 1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노점을 행정의 제도적 권역으로 흡수하여 양성화 및 합법화 추진을 위한 노점상 허가제 추진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함.  
(안 제명)
- 나. 제2조의 제목을 변경 함.(안 제2조 제목)
  -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
- 다. 부천시노점허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을“(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점용료는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를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으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노점허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노점상 허가대상자의 자격기준 선정과 설치·영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노점허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시 소속 관련 공무원 5명 이내

3. 법조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9명 이내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점상업 무담당과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안전심의 또는 그 밖의 정책건의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b></p> <p>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94조에 따라 부과한다.</p> <p>&lt; 신 설 &gt;</p>	<p><b>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b></p> <p>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 으 며 ,</p> <p>-----</p> <p>-----</p> <p>-</p> <p>-----.</p> <p>제2조의2(노점허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노점상 허가대상자의 자격기준 선정과 설치·영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노점허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회 의원 1명</li> <li>2. 시 소속 관련 공무원 5명 이내</li> <li>3. 법조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9명 이내</li> </ol>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p> <p>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p> <p>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점상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p> <p>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5.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안전심의 또는 그 밖의 정책건의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시행 2009.4.1] [법률 제9577호, 2009.4.1, 일부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4호, 2008.12.31, 전부개정]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